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58
----------	-----

2025. 4. 30.(수)
산 업 경 제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임병운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4월 22일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임병운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푸드테크산업 종합계획 수립·시행 (안 제4조)
- 실태조사 (안 제5조)
-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안 제6조)

-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7조)
- 위원회 구성 (안 제8조)
-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발의배경

-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IT.BT.AI 등 첨단기술 등이 결합된 新산업으로 국내외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⁸⁾에 따르면 국내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약 61조 원으로 전체 식품산업(식품제조·외식·유통 등 570조)의 약 10.7%로 추정되며, 2017~2020년 동안 연평균 31.4% 성장함
- 푸드테크산업은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역 농산물 연계 산업화 등으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 특히, 충청북도는 바이오와 식품 관련 인프라 및 연구 기반이 풍부하여 푸드테크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지리적·산업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03.12., 2024 식품외식산업 7대 이슈

고 체계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을 추진함

나. 제정안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3조**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향후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됨
- **안 제4조**는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해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계획의 수립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됨
- **안 제5조**는 푸드테크산업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종합계획의 기초자료 확보 및 정책 수요 예측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필요하다 할 수 있으며, 외부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조사 범위와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안 제6조**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동이용 R&D시설, 대체단백질 등 신기술 연구, 현장 실증, 투자 촉진 등을 통해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구성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
- **안 제7조 및 제8조**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자문을 위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산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에 협회, 학계, 기업 등 관련자가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9조**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푸드테크산업 관

런 기관·단체·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관련 법령 등 검토

- 본 조례안은 식품과 기술을 융합한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호 차목에서는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을 지자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대해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필요성) 푸드테크산업은 ICT, BT, AI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고성장 신산업으로서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 지역 농산물 활용 등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산업인 만큼 바이오·식품 인프라가 우수한 충청북도가 이를 선제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 (타당성)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협력체계의 구축 등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제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조례의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 보여짐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를 바탕으로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958호
의 결 연 월 일	. . . (제 회)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11일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임병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58
----------	-----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11일

발 의 자 : 임병운, 김꽃임, 이옥규, 박경숙
유재목, 이의영, 이종갑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푸드테크산업 종합계획 수립·시행 (안 제4조)
- 실태조사 (안 제5조)
-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안 제6조)
-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7조)
- 위원회 구성 (안 제8조)
-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5. 4.
- 협 의 : 농정국 농식품유통과
-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식품가공산업, 외식산업, 식품유통산업 등 식품산업에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을 접목한 식품기술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부품·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는 신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푸드테크산업 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산·관·학·연 등과의 협력방안
3. 푸드테크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
4. 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
5. 푸드테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외 기업 간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7.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푸드테크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관련 공동이용 생산연구시설 및 연구개발 장비 도입·활용
2. 대체단백질 등 푸드테크 소재의 연구개발
3. 푸드테크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4. 푸드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및 인력양성
5. 푸드테크 제품의 홍보 및 기업 투자 촉진
6. 도내에서 생산된 원료를 이용하는 푸드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푸드테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푸드테크산업 관련 협회, 학계, 조합, 법인 및 사업체의 대표

2.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
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내 푸드
테크산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소유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식품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제고하고,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임.

2. 비용 발생요인

-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안 제4조(푸드테크산업 종합계획 수립)
 -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종합계획 수립·시행(5년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추계기간 :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2)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종합계획 수립

나. 추계결과

1) 산출과정

- 푸드테크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 30,000천원 (2025년 추진, 5년마다 실시)
 - 푸드테크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식 x 30,000천원 x 1회 = 30,000천원

- 2) 산출결과 : 2025년부터 향후 5년간 30,000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세출)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30,000	30,000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용역	30,000	30,000				

6. 작성자 : 농정국 농식품유통과장 용미숙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						
세 출		30,000					30,000
	충청북도 푸드테크 산업육성 종합계획 용역	30,000					3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